



2017년 합격!!
02)3280-9990

지방세법

2017 수탁지방직 기출문제(D책형)

PMG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http://nambugosi.com

I 총평

이번 2017년 수탁지방직 지방세법은 평이한 수준이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조금 까다로웠으며 그 외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다.

II 출제경향

구 분	문항수	출제문제
지방세기본법	5문제	1.지방세부과의 원칙 2.제척기간과 소멸시효 3.특별징수제도가 있는 세목 4.수정신고시 가산세감면 5.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종합
지방세징수법	2문제	1.징수유예사유 2.강제적 압류해제사유
지방세법	12문제	1.취득세 중과세 대상 2.취득세 과점주주 납세의무 3.등록면허세 종합 4.재산세 종합 5.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6.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7.자동차세(소유)의 수시부와 사유 8.주민세 과세표준과 세율 9.담배소비세 면제사유 10.레저세 종합 11.지방소비세 납입 12.지방소득세 종합
지방세특례제한법	1문제	1.세액감면과 세액공제

III 기출해설

지방세법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수탁지방직

- 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②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결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된다.
- ④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답> ④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

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제척기간

구 분	내 용	제척기간
지방세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	10년
	②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10년
	③ ② 이외의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④ 그밖의 경우	5년

문 2. '지방세법'상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017. 수탁지방직

- ①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
 - ②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③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 ④ 수출 상담을 위한 전본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답> ②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미납세 반출대상이지. 면제대상이 아니다.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지방세법 제54조제1항>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전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가족 또는 나속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②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2017년 합격!!

02)3280-9990

지방세법

2017 수탁지방직 기출문제(D책형)

PMG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http://nambugosi.com

문 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2017. 수탁지방직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항).

-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문 4.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초과한금신고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7. 수탁지방직

- ①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답>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50%, 6월 초과 1년 내의 경우 100분의 20으로 하되, 1년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함.

문 5.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수탁지방직

- ①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이다.
③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답> ② 카지노는 세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4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 ㉠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문 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수탁지방직

- ①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
②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과 동법 제74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없다.

<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제2항.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여 조정할 수 없다.

- ①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 제1항).



2017년 합격!!

02)3280-9990

지방세법

2017 수탁지방직 기출문제(D책형)

PMG 남부고시학원

http://nambugosi.com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②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문 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2017. 수탁지방직

- ㄱ. 석탄을 채광(採鑛)하는 자
 ㄴ.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ㄷ.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ㄹ.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양수발전을 하는 자
 ㄱ.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ㄱ
 ④ ㄴ, ㄹ, ㄱ
 <답> ③ ㄴ, ㄷ, ㄱ

- ㄱ. 지하자원 : 석탄과 「광업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광구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ㄹ.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것(지방세법 제14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 ① 발전용수 :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0,000kW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000kW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 ① 지하수 : 먹는물, 목욕용수, 그 밖의 용수. 단, 농어촌용수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와

지하수법」 규정에 의한 지하수는 제외한다.

- ㉔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광구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 ㉔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화물을 옮겨 싣는 것)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 ㉔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 ㉔ 화력발전 :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0,000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문 8.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수탁지방직

- ①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②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③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 ④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답>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은행은 대표적인 중과세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임.
- 사회기반시설사업, 은행업, 전기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 가족시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 물류터미널사업, 의료업, 자원재활용업종, 소프트웨어사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등

문 9.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수탁지방직

-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



2017년 합격!!

02)3280-9990

지방세법

2017 수탁지방직 기출문제(D책형)

PMG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http://nambugosi.com

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 ③ 납입관리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동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답>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 10.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수탁지방직

- 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이와 달리 소급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어야 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 ④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답> ①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문 11.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징수방법으로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2017. 수탁지방직

- ㄱ. 취득세
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ㄷ. 담배소비세
ㄹ. 주민세
ㅁ. 레저세
ㅂ.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ㄹ, ㅁ, ㅂ

<답> ③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세목은 ㄴ, ㄷ, ㅂ과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이며, 이 중 특별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

과되는 것은 지방소득세 뿐이다.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제도

구분	대상	특별징수의무자	납부기한	납세지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달 10일까지	• 근로소득: 근로자관할 지자체 • 이자배당: 지급지 관할 • 복권판매: 판매지 관할
㉡ 자동차세	주행	• 1차: 제조장 관할 지자체장 • 2차: 울산광역시	• 다음 달 10일까지 • 다음 달 25일까지	• 울산광역시에게 • 전국 지자체에 배분
㉢ 등록면허세	특허권 등	특허청장 등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관할 지자체장에게
㉣ 담배소비세	수입판매시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군수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자체장에게
㉤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 1차: 관할 세무서장 • 2차: 납입관리자(도지사)	• 다음 달 20일까지 • 납입일~5일 내	• 납입관리자(도지사)에게 • 각 시·도지사에게 배분

문 12.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수탁지방직

- 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 ③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④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답> ①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주택법 제2조 제1호), 이 경우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주택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문 1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017. 수탁지방직

- 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②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 ③ 압류한 금융재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 ④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답〉 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채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는 임의적 해제사유이다.

경제적 해제사유	임의적 해제사유
①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①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②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③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④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할 때	④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⑤ 확정 전 보전압류시	
㉠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까지 압류에 따라 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문 14.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2017. 수탁지방직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답〉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남기마다 늦어도 남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

- ㉠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 ㉢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문 15.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重課)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2017. 수탁지방직**

- 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 ③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실험·실습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④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답> ①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즉,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 장

- ① 상시 주거용(×), 주거용 건축물(○)
- ② 소유자의 직접 사용여부와는 관계없이 휴양, 피서, 놀이의 용도
- ③ 부속토지의 경계가 불명확시 : 바닥면적의 10배
☐ 양도소득세 : 바닥면적의 5배 또는 10배
- ④ 농어촌주택은 제외
☐ 농어촌주택
 - 면적기준 : 대지 662㎡ 이하, 건물연면적 150㎡ 이하
 - 가액기준 : 건물의 시가표준액 6,500만원 이하
 - 지역기준 : 수도권 밖, 허가구역 이외지역, 도시지역 밖, 투기지역 이외 지역

2. 골프장

- ① 골프회원권, 대중골프장, 골프연습장(×)
- ②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 토지상의 임목
- ③ 중과세 시기 : 등록하는 때(변경등록 포함) 또는 사실상 사용할 때
- ④ 기존 골프장 승계취득시(일반골프장 등) : 중과세 제외

3. 고급오락장

- ① 도박장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 ② 부속토지 경계가 불명확시 : 바닥면적의 10배
- ③ 일부시설 : 면적에 비례하여 종가세
- ④ 종가세 배제 :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월, 비거주자는 9월) 이내에 용도변경 시에는 종가세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선박

- ① 비영업용 자가용 선박 :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 ② 실험·실습용은 제외

5. 고급주택

- ① 범 위



2017년 합격!!
02)3280-9990

지방세법

2017 수탁지방직 기출문제(D책형)

PMG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http://nambugosi.com

구분	면적	건물가액(시가표준액)	주택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단독주택	건물 331㎡ 초과 대지 662㎡ 초과	9,000만원 초과 9,000만원 초과	6억원 초과 6억원 초과
특수부대설비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수영장 설치		—
공동주택	연면적(공용면적 제외)	245㎡ 초과(복층형: 274㎡ 초과시)	6억원 초과

- ② 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 즉, 공동주택으로 본다.
③ 취득일로부터 30일, 상속의 경우에는 6월, 비거주자는 9월 내에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에 착수시 증과세를 배제

문 1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수탁지방직**

- 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어서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른 보정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포함한다.

<답> ②

- 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할 수 없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④ 보정기간은 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 제95조 제3항).

문 17.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옳은 것은? **2017. 수탁지방직**

- ㄱ.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ㄴ.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ㄷ. 기계장비('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ㄹ.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답> ③ 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이지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150조).

-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 재산세(재산세과세특례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문 18.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수탁지방직**

-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④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경우 제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답> ③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납세지>

-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
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
한 지방소득세 :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 ㉡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
소지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문 19.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수탁지방직

- ①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으로 하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②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표준세율은 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

<답> ①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문 20. '지방세법'상 **甲**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점주주 **甲**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수탁지방직

(단위 : %)

사례	구 분	설립 시 주식등의 비율	증가한 주식등의 비율	주식등의 비율 누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
A	법인설립 시 취득	35	—	35	—
	증자 등으로 취득	—	25	60	60
B	법인설립 시 취득	60	—	60	—
	증자 등으로 취득	—	20	80	80
C	법인설립 시 취득	10	—	10	—
	1차 증자 등으로 취득	—	50	60	60
	2차 증자 등으로 취득	—	10	70	10
D	법인설립 시 취득	10	—	10	—
	1차 증자 등으로 취득	—	20	30	—
	2차 증자 등으로 취득	—	35	65	65

- ① A ② B
③ C ④ D

<답> ② 설립시 과점주주이므로 증가분 20%를 취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주식 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